

#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정관**

## **ICID Constitution**

**김 주 창 \*역**  
Kim, Ju-chang

### **제 1 장 서 문**

1.1 국제관개배수위원회는 용수 및 토지의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위한 식량과 섬유의 세계적인 공급을 증진시키고, 용수, 환경 그리고 관개, 배수, 홍수조절 기술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를 통하여 경지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전문적, 자발적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1.2 이 정관에서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ICID(불란서어로는 CIID)로 약칭하고, 국제기구간에서는 ICID(불란서어에서는 CIID)로 약칭한다.

### **제 2 장 목 적**

#### **임무**

2.1 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임무는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농업을 위한 종합적 접근방법과 최신의 기술을 채택하고 연구개발 및 능력배양을 통하여 관개, 배수, 홍수조절 및 하천개수에 대한 엔지니어링, 농업, 경제, 생태 그리고 사회과학 부문의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 **범위**

2.2 ICID는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표를 설정한다.

- 1) 댐,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와 용수의 저류, 수송, 분배, 집수, 처리 등의 기타 관련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운영과 토지의 개척 및 개량을 위한 관개, 배수, 홍수조절 등의 계획, 재정, 사회경제 및 환경적 문제
- 2) 대형댐과 통선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기초수문학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부속 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운영과 하천개수, 홍수조절, 농경지 해수침투 방지를 위한 사업지구의 계획, 재정, 사회경제 및 환경적 문제
- 3) 관개, 배수, 홍수조절, 하천개수 및 토지개척에 관한 기초 및 응용 과학, 기술, 관리, 설계, 운영, 유지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교육 및 능력배양
- 4) 개발도상국 특히 관개배수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저소득 국가에서 필요한 국제적 지원의 추진
- 5) 지속적인 관개배수 조직의 개발과 조직적 관리의 진흥
- 6) 관개, 배수, 홍수조절에 관련된 주제에 대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연구위원

- 한 국제적 지식의 종합 및 세계적 이용 확산
- 7) 관개, 배수, 홍수조절 사업에서 생기는 문제와 도전의 파악 및 적정 해결대책의 수립 장려
  - 8) 농업용수 절약 장려
  - 9) 남녀간의 공평성을 포함한 사용자와 관개, 배수, 홍수조절 조직의 수익자간 공정성의 장려
  - 10) 관개농지의 토양 및 수질의 보전과 개량 장려
- 2.3 ICID는 다음과 같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 1) 각 국가위원회간의 정보 교환
  - 2) 정기적 회합, 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전시회, 교육, 시찰여행 등의 개최
  - 3) 연구 및 실험의 시행
  - 4) 연구회지, 회의 보고서, 보고서, 지침서, 서적, 문서, 시청각 자료, 전자매체 자료의 발간
  - 5) 관개, 배수, 홍수조절에 관련된 정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소식지, 회지, 정기간행지, 팜플릿, 포스터, 잡지, 교육보조물 그리고 문현 등 특수, 또는 기타 간행물의 발간
  - 6) ICID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타 국가,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 7) 활동분야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조치 시행

## 제 3 장 회 원

### 회원의 자격

**3.1** ICID는 각 국가별 1개 국가위원회를 기본으로 참가국들의 국가위원회로 구성된다. 국가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ICID의 목적에 알맞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정부기구, 연구소 등의 관리나 임원이 ICID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대표자로 지명되어야 한다.

**3.2** 주권을 가진 정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지

배되는 어느 지역적 지역이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 ICID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의 경우로 집행위원회는 분리된 주권을 가진 지역이나 국가들의 공존을 존중하여 한 국가의 분리된 주권을 가진 지역의 대표성을 별도의 국가위원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방정부나 이와 유사한 정부조직을 가진 경우에는 1개 국가위원회로 ICID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 회원가입 신청

**3.3.1** 회원가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구성된 국가위원회나 대표자는 위원회의 정관과 세칙을 준수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관개, 배수, 홍수조절의 개발과 관리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에서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회원 가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가입 신청서 양식은 세칙 또는 이 정관이 정하는 기타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 회원가입 승인

**3.4** 정관과 세칙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국제집행위원회가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국가위원회의 명칭과 연회비를 결정한다.

### 비회원 참가

**3.5** ICID는 비회원국의 개인, 그리고 회원국의 국가위원회와 공식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ICID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칙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4 장 국가위원회

### 구 성

**4.1** 각 국가위원회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서 각 국가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관개, 배수, 홍수조절 활동의 관련분야간 특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ICID의 목적에 관심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원하는 정부 대표, 과학기술기관, 관개농민, 회사와 개인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후로는 국가위원회라는 용어가 3.1조에 설명한 대표자를 포함한다.

## 책 임

**4.2** 각 국가위원회는 ICID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ICID와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국가의 형편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ICID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기술분야 및 기관간의 제휴와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4.3** 각 국가위원회는 정관 사본과 수시로 정관이 개정되는 내용을 ICID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장 국제집행위원회

### 정 의

**5.1** 국제집행위원회(이후에는 집행위원회 또는 IEC라 한다)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 역 할

**5.2** 집행위원회는 어느 국가위원회, 임원 또는 경영위원회가 제기한 모든 정책업무를 고려해야하고 어떤 정책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결정하며 조언하고 입안할 수 있다. ICID의 본부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ICID가 조직한 연구, 실험 또는 토론의 권장사항이나

결론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ICID의 집행상 또는 행정상의 기능과 재정적 부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한다.

### 구 성

**5.3** 집행위원회는 임원과 각 국가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지명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각 국가위원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다. 한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지명된 국가위원회의 대표자와 임원은 그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5.4** 어느 국가위원회든 1인 이상의 대표자를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국 또는 각 국가위원회는 하나의 투표권만 갖는다. 전·현직 임원은 국가위원회의 대표자로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회장만이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의사결정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투표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5.5** 어느 집행위원회 회의에 대표자를 출석시키지 않은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문서로 어떤 사항을 사무총장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낭독해야 하지만 어느 특별한 경우에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투표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6** ICID의 전임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각각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사무총장으로 지칭한다. 그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지만 그들의 각 국가위원회를 대표하는 경우 이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5.7** 집행위원회는 원하는 기능의 수행과 정책 또는 결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수팀 및 기타 작업팀을 설치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들에게 특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회 원 : 가입과 탈퇴

**5.8** 집행위원회는 정관과 세칙에 따라 접수된 ICID 회원 가입신청을 검토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어느 가입신청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승인하거나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어느 국가위원회가 회비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해당 국가위원회로 하여금 특별히 지정된 일시까지 미납회비를 완납할 기회를 준 후에 그의 ICID 회원 자격을 규제할 수 있다. 2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국가위원회는 미납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ICID 임원이나 부속기구의 구성원 취임자격을 정지한다. 더 나아가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국가위원회는 추가로 ICID로부터 문서나 보고서를 받을 권리를 정지하고 집행위원회 회의시 투표권을 갖지 못하며 ICID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집행위원회가 특례로서 이런 제재의 적용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도록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결정은 세칙에 규정된 특별 절차에 따라서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회비 미납자가 아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엄격하게 행하여야 한다.

**5.9** ICID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이 정관의 틀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연 회의

**5.10** 집행위원회 보통회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장소에서 연간(역년기준) 수입, 지출 예산안의 승인과 임원 선출 등 위원회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개최하여야 한다. 이전에 집행위원회 연 회의나 ICID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참가국으로부터의 회의 개최지 신청에 우선권을 준다. 집행위원회는 특별회의 또는 기타 회의의 개최에 대한 세칙을 만들 수 있다.

**5.11** 두 총회의 중간에 개최되는 집행위원회 보통회의에서 주최국이 원하면 그들이 선택하

는 어느 특별한 기술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보통회의와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다른 국가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요청하지 않고 주최국이 회의 2개월전에 각 국가위원회와 ICID 본부에 주제, 토론할 문제들을 분명히 제시하는 보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 제 6 장 임 원

### 구 성

**6.1** ICID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9인 및 사무총장 1인으로 구성하여 회장과 부회장은 명예직이다.

###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6.2.1**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선거를 할 때 참석한 집행위원회 위원의 다수결 투표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부회장의 선임 순서를 정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 절차를 세우는데 필요한 세칙을 만들어야 한다.

**6.2.2** 어느 한 국가는 10명의 임원(회장 1인과 부회장 9인) 중 1인보다 많은 인원을 같은 시기에 차지하지 못한다.

**6.2.3** 6.5.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은 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되고, 그 총회와 후속 시찰여행의 종료시에 임기가 시작한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총회의 종료시부터 다음 총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6.2.4** 9인의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는 선거를 행한 집행위원회 회의와 그 후속 시찰여행의 종료시에 시작되고, 다음 세 번째 집행위원회 보통회의와 그 후속 시찰여행의 종료시에 끝난다. 세 번째 집행위원회 회의가 총회시에 개최되는 경우는 총회와 후속 시찰여행의 종료시에 임기가 끝난다. 집행위원회 특별회의는 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2.5** 회장 또는 부회장은 3년의 온전한 한

임기만 취임하며 6.5조의 임명에 의한 부분 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사무총장의 임명**

**6.3.1 지명 :** 사무총장은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지명하고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6.3.2 임기 :** 사무총장의 임기는 집행위원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3년이다. 그리고 보통 역년의 개시와 함께 시작하거나 임명 장에 기록된대로 한다. 가능한 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은 시기에 끝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현직 사무총장은 연속 재임을 위하여 재지명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무총장은 3차 연임을 위하여 재지명될 수 있다.

**6.3.3 지명조건 :** 사무총장의 지명조건과 시기는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정한다.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은 사무총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업무의 연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임명의 부정**

**6.4 회장과 부회장의 직에 있어서의 임명 또는 계속에 대한 어떤 부정이 있어도 국제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결정이나 결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 **회장의 사고**

**6.5.1 회장이 일시적으로 사고를 당하여 집무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회장직에 대한 검토를 할 때까지 사고기간 동안 최선임부회장이 회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6.5.2 회장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영구적 무자격자가 되거나 사임한 경우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등의 순서로 다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공석을 채울 때까지 회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 **부회장 공석**

**6.6 어떤 이유든 부회장에 공석이 생긴 경우는 집행위원회가 다음 회의에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 **사무총장의 사고**

**6.7.1 사무총장이 임기 중 일시적으로 사고를 당하여 집무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에 대한 검토를 할 때까지 사고기간 동안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사무총장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7.2 사무총장이 임기 중 영구적 무자격자가 되거나 사임 또는 사망한 경우는 새 사무총장이 집행위원회에서 임명될 때까지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사무총장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은행에 통보**

**6.8 6.7.1조와 6.7.2조에 언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회장이 그 정보를 은행에 통보하여 경우에 따라 사무총장이 회복하거나 새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지정된 직원이 ICID의 은행계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집행위원회의 권한 위임**

**6.9.1 집행위원회는 수시로 특정 기능, 권한 및 권리를 편의상 ICID의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회장은 회장직에 속한 통상적 임무를 행해야 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경영위원회는 회의를 주최하는 국가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 총회, 회의 또는 집행위원회 연 회의와 함께 시행되는 특별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6.9.2 집행위원회는 수시로 원한다면 사무총장 또는 업무수행 부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회장의 부재

6.10 6.9.1조와 6.9.2조의 경우는 제외하고 부회장은 선임의 순서로 회장 부재시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개회 및 폐회식에서 회장 부재시는 총회 개최전 임원회의에서 정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회장의 임무

6.11 회장은 국제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ICID 최고 임원이다. 회장의 임무는 정관과 세칙의 규정에 따르는 다음 임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 집행위원회 회의 주재
- 경영위원회 주재
- 임원위원회 주재
- 중앙사무국의 직원위원회 주재
- 사무총장의 지명
-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 임명
- 부회장에게 특별임무 지정
- 국가위원회로부터 회장 및 부회장직 지명 초청
- 국제적 광장에서 ICID 대표
- ICID 재정 및 예산 검토
- ICID 국제 홍보
-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임무 수행

## 사무총장의 임무

6.12.1 사무총장은 ICID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업무의 수행과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의 의제 작성 및 회의록 기록에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ICID의 총회와 기타 회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또 ICID를 위하여 집행위원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권한이나 권리를 집행한다.

6.12.2 사무총장은 또한 ICID의 재정담당자가 되고 매년 집행위원회가 지시할 때 위원회의 회계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또 연(역년기준) 수입, 지출 예산안을 작성하고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2.3 여기서 요약된 임무에 추가하여 사무총장은 ICID의 홍보, 국제기관과의 관계 조성 및 유지, 그리고 관개, 배수의 세계적 연구수행과 정책추진에 직접적 책임을 진다.

## 제 7 장 경 영

### 경영위원회

7.1 집행위원회는 ICID의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전 회장(1년간), 기술활동상임위원회 위원장, 재정상임위원회 위원장, 전략계획 및 조직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 뉴델리의 ICID 본부

7.2 ICID의 본부는 인도 뉴델리에 두며, 회장의 직접 지휘 아래 집행위원회의 일반적 감독을 받으며 유지된다.

### ICID 본부의 행정

7.3 회장이 주재하고 경영위원회가 정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직원위원회가 변화하는 조건에 맞추어 ICID 본부의 업무절차와 직원구성을 검토하고 재조정하며 ICID 본부의 기능 발휘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조언한다.

ICID 본부에는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그리고 ICID 본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위원회가 승인한 직원을 둔다(6개월 이내의 단기 근무직원은 직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음).

사무총장은 예산 규정과 수시로 직원위원회가 만드는 지침에 따라 ICID 본부의 직원을 임명하고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직원위원회와 협의하여 직원의 관장과 본부 적정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ICID Contributory Provident Fund Rules을 포함한 규칙들과 절차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또 ICID를 위하여 바람직한 권한의 위임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직원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재정관리

**7.3.1**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현재의 업무, 자금 및 회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부 직원들에게 알리고 ICID를 대신하여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한다.

**7.3.2**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자금을 예금할 은행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회비와 기타 ICID로 오는 돈을 수령한다.

**7.3.3** 매년 집행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승인한다. ICID의 회계연도는 경영위원회가 결정한다.

**7.3.4**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사무총장이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중앙사무국의 일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 다른 항목에 대한 비용지출은 경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3.5** 집행위원회 회의가 3월 31일 전에 개최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은 2월 말에 경영위원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그 해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되거나 경영위원회가 수정한 예산에 따라 4월 1일부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7.3.6** ICID의 회계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 문서

**7.4.1** ICID 본부는 회지, 회보, 소식지 그리고 ICID 활동분야에서의 사업기사, 기술기사, 연구내용 및 새로운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타 정기 통신문을 발간한다. 또한 원하거나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정기간행물, 팜플릿, 잡지 및 특별 간행물을 발간한다. 정기간행

물과 특별 간행물의 재정 조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7.4.2** ICID 본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를 만들고 ICID의 업무에 대한 연보를 발간한다. ICID 본부는 또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연구, 시험, 조사, 실험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각 국가 위원회에 분배하여야 한다. ICID 본부는 또 집행위원회, 경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직원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의제와 회의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7.4.3** ICID 본부는 국가위원회간에 문서와 기타 정보의 교류를 조정한다. 이는 ICID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지시 또는 승인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 도서관

**7.5** ICID 본부는 ICID 활동분야와 관련분야에 속하는 서적의 기술도서관을 운영한다.

도서관은 문헌목록, 여러 주제에 대한 세계적인 조사와 특별 간행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ICID 본부는 또 ICID의 기록, 보고, 문서를 유지관리한다.

## 민사사건 대표

**7.6** ICID에 속하는 민사사건에서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ICID를 대표한다. 사건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신속히 그것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장 기술회의 총 회

**8.1.1** 집행위원회는 ICID의 활동범위내에서 논문, 보고서 및 토론을 위하여 수시로 특별회의, 심포지엄, 세미나를 포함하는 총회, 지역회의, 워크숍 그리고 회의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들 회의에는 집행위원회가 정한 재

정 및 기타 조건에 따라서 회원국의 국민은 물론 비회원국의 국민도 참가할 수 있다.

**8.1.2** 총회는 필요하면 특별회의,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를 포함하며, 그 개최 시기와 장소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8.1.3**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토론하기 위한 주제 또는 질문을 정한다. 집행위원회는 기술회의 논문제출, 참석 및 시행을 위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총회의 결의안

**8.2** 총회 또는 다른 기술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별도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간주되고 위원회의 관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사용언어

**8.3** ICID의 공식 사용언어는 영어와 불어로 한다. 통역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대로 제공한다. 관개배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넓은 공동체를 감안하여 집행위원회는 다른 국제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회의록

**8.4** 총회 회의록과 기술회의 회의록은 총회 또는 기술회의가 끝난 후 될수록 빨리 발간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 주최국의 도움을 받아 ICID 본부가 발간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회의 주최국의 책임을 정하고 또 그 국가위원회가 기술회의의 논문, 회의록 등의 인쇄비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결정한다.

### 지역회의

**8.5** 집행위원회는 어느 국가위원회가 같은

지리적 지역내의 국가위원회간의 협력으로 지역적 기술회의를 조직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제 9 장 국제기관과의 협력

### ICID에의 참여

**9.1** ICID 본부는 경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총회, 심포지엄, 기술회의, 세미나 그리고 기술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ICID 집행위원회 회의, ICID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국제 기관, 과학학회, 개발기구, 국제 재정기관 그리고 UN기관의 대표자가 영구 업저버로 참가하는 지위를 갖도록 승인할 수 있다. 국제기관의 대표자는 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ICID가 설치한 임시 작업팀의 구성원으로 일하도록 초청받을 수 있다. 이를 대표자에게 제공할 특전이나 편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 합동회의

**9.2** 집행위원회는 다른 국제기관과 ICID 활동범위내의 주제로 회의, 회합 및 심의를 공동 주최하거나 활동, 연구 및 조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공동활동에 대한 재정 및 기타 조치는 ICID의 대표자와 국제기관 간에 합의되고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ICID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국제적 업무에 대한 협력을 위하여 국제기관과 공식적인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수자원, 기타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의 광범위한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유명한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가할 수 있다.

### 업무비용

**9.3** ICID는 어떤 기관의 비용으로 그 기관

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실제 시행은 각 경우별로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0 장 회비와 자금

### 연 회비

**10.1** ICID의 활동비용이나 특별 목적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회원국의 국가위원회나 대표기관은 정기적으로 사무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연초에)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근거하고 회원국의 지불능력 및 관심이 고려된 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기타 특별회비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비

**10.2** 총회, 집행위원회, 지역회의, 기술회의, 국제 워크숍 또는 기타 국제활동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주최국 국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인의 등록비 또는 참가기관의 참가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사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ICID 본부의 중앙사무국 예산에 넣도록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자 금

**10.3** ICID 본부는 ICID의 자금으로, 일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별연구, 특별 조사 실험사업을 위한 회비, 보조금 또는 증여금을 수령하여 관리할 권리를 위임받고 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일반적 범위내에서 다른 국제기관, 적절한 자격이 있는 정부 또는 민간 연구소, 또는 기술학회나 협회와 협동연구, 조사 또는 실험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비영리

**10.4** ICID는 영리기관이 아니고 상업기관도

아니다. ICID의 수입과 재산은 위에서 설명한 ICID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간접으로 배당금, 상여금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을 위한 수익금으로 지불될 수 없다.

- 1)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결정한 사무총장에 대한 보수 지불
- 2)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 지불
- 3) 경영위원회의 특별 요청이나 승인을 받아 일한 임원의 실비 보상
- 4) 위원회의 목적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ICID가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
- 5) ICID의 목적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ICID에 봉사한 개인에 대한 사례금 지불

### 탈퇴후 요구 불가

**10.5** 회원국이 ICID를 탈퇴하거나 ICID 참가를 중지할 때 자금, 재산 또는 서비스에 관한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

### 재가입

**10.6**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 ICID에서 탈퇴되었거나 회원 중지를 당한 경우 미납회비를 완납하거나 집행위원회에서 정해준 금액을 납부하면 재가입할 수 있다.

## 제 11 장 정관과 세칙의 개정

### 정관 개정

**11.1.1** 정관 개정은 국가위원회나 사무총장이 제안할 수 있고 문서로 작성하여 정관에 따라 임명된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추가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11.1.2**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개정안의

제를 토의할 집행위원회의 회의개최일 적어도 2 개월전에 ICID 본부가 각 국가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 개정안의 채택에는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1.3 정관 개정 검토 처리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세칙의 변경, 수정, 추가 또는 삭제의 필요성을 발견하면 회장 또는 사무총장과 협의하고 11. 2 조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세칙 제정

11.2 위원회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세칙의 채택과 개정

11.3 세칙의 수정, 개정, 추가, 삽입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의 다수결로 승인을 받아 채택한다. 이와 같은 수정, 개정, 추가, 삽입은 먼저 문서로 국가위원회나 사무총장이 제안을 하고 정관 5.7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임명된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추가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세칙의 제정, 수정 또는 폐지를 검토, 채택할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일 적어도 2개월전에 ICID 본부가 각 국가위원회와 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 12 장 해산과 청산

## 해 산

12.1 ICID는 집행위원회 정기 또는 특별회의에서 전체 회원국(회의 불참국 포함)의 2/3 이상이 해산을 결의하면 해산된다.

## 청 산

12.2 ICID의 해산에 있어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남은 재산은 집행위원회 위원이나 회원국에 분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ICID 본부 건물을 제외하고 ICID의 잉여재산이 있으면 이것은 해산전이나 해산시의 집행위원회 그리고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ICID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ICID 본부 건물에 대해서는 인도의 대통령(임대인)과 국제관개배수위원회(임차인)간의 영구임차계약(1972년 1월 3일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 약 력

### 김 주 창



- 1960. 서울대 농과대학 농공학과 졸업
- 1966. 화관 국제수리공학과정 수료
- 1983. 강원대 대학원 석사
- 1993~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 1995. 수리시험장장 역임
- 현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연구위원  
KCID 이사 / 편집·학술분과 위원회 부위원장